



『주발제문(학생자치규약제정운동 제안글)』

“축소되어가는 학생권 확대를 위하여”

『학생자치규약』

발제 1 - 관악여성모임

발제 2 - 행동과 연대



축소되어가는 학생권¹⁾ 확대를 위하여

- (학생회)자치권 탄압에 대한 입장과 자치규약제정운동 제안글 -

1. '자치'와 '자치권', '(학생)교육권'과 '학생권'과 '(학생)자치권'의 차이²⁾

사실 '자치'와 '자치권'은 사전적으로는 그다지 많은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운동진영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다소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기간의 활동에서는 사실 '자치권'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학생회활동이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시절(지금은 그렇지

1) 뒤의문서에서 '학생권'의 개념과 왜 '학생권'을 강조하는지가 서술되어진다.

2) 여기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주 자의적임을 밝히두고자 한다. 이러한 자의적인 개념규정을 동의받고자 하는 의지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은 이 문서를 작성하는 궁극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것은 문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개해나가는데 오해의 소지들을 최대한 차단하고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함이다.

학생권 확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현재는 학생회중심성에서 과거보다는 벗어났다고 판단한다.) 학생회의 활동을 자치활동으로 달리 불리웠고 학생회활동에 대한 제약과 탄압을 학생자치권탄압으로 이름지었다. 그러나 현재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자치'의 개념은 이러한 '자치권'의 의미보다 확장되고 발전된 것이다. '자치'란 의미 그대로 '스스로의 정치'이다. 따라서 현재 '자치의 전면화'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회 활동을 좀더 자유롭게 보장하라는 구호로 대치될 수 없으며 대학사회에 만연한 대의제를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발굴하고 쟁취해가는 정치지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치'와 '자치권'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혼동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현재는 각 학교별로 학교당국에 의해(본질적으로는 자본에 의해) 학생회자치활동 탄압과 학생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분명한 학생들의 반대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이의 관점은 과거 '자치권'의 개념을 포함하고 상승시킨 '자치'의 전면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권', '학생권', '자치권'의 개념차이와 관계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위의 '자치'와 '자치권'이 그러하듯 학원사회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면서 구분되어지지 않고 쓰여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 세 단어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편의상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학생권'이라는 개념은 작년 교육운동연대회의 소식지 2호에서 주장되고 제기되었던 단어였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학생권의 개념을 발굴한다'는 데제아래 ① 자신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 ② 자치와 민주주의: 대학내 권력관계의 재구성, ③ 대학과 학문의 사회화의 주체로서의 학생 등등의 측면에서 학생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서술되어있다. 여기서 '교육권'과 '자치권'의 개념과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면, 교육권은 학문연구와 생산과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권리라 이해하고 자치권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다. 그렇다면 교육운동연대회의에서 주장한 '학생권'은 이러한 '교육권'과 '자치권'을 합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적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³⁾

문서의 제목에서 '학생권'을 주장한 측면은 여기에 있다. 교육(과정)의 주체로써 '교육권'과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로써 '자치권'을 학생의 권리로써 모두 주장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권'은 앞서 '자치'의 관점에서 주장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권'과 '학생권'의 관계내지 의미에 있어 교육권안에 학생권, 교수권, 강사권등이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이 문서에서 학생권을 강조하는 것은 문서에서 계속 서술되지만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주장해나가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학생권에는 교육권과 자치권등으로 크게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2. 학생권 축소가 의미하는 것

“예초 주어져 있지 않던 학생들의 권리가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조조정으로 인해 이제는 완전히 말살될 위협에 놓여 있는 지금 학생권을 외치는 것 이외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교육운동연대회의 소식지 『우리는 행동한다』 2호 프랭스 68혁명, 학생의 날, 학생권' 중)

작년을 경과하면서 학생운동의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놀랄만한 것은 자본이 대학으로 잠입해 들어오면서 대학교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학과 대학교육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자치권과 교육권도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운동진영은 어떠한 입장이냐 대응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학생운동위기의 여러 현상과 다르지 않은 또다른 모습이다. 현재의 덕성여대의 학생운동진영을 무력화하려는 작업과 항공대, 시립대, 동덕여대, 용인대 등등.

이렇듯 각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자치권 축소의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특성이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축소, 말살시키는 것이라면 자본의 이윤증식 공간중 하나인 대학사회또한 여과없이 이러한 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거고, 전반적인 사회적 경향속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김대중정권의 이와같은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본과 대학당국의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자본의 대학을 통한 이윤증식논리가 그대로 흡수될 수 있기 위해 대학교구성원들의 저항을 없애기 위함이고, 그중 교육의 소비자이자 가장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학생운동진영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간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의 자치권뿐만이 아닌 교육주체로서의 권리또한 축소되고 있다.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교육의 공공성이 후퇴하면서 학생들은 교육의 소비자로 전락하게 되고 공적인 학생들의 교육주체로서의 권리또한 사라져가고 있다.

때문에 학생운동진영에게로 표적되고 있는 자치권축소와 전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권축소는 다른 양상을 띠지만 결국 동일한 자본과 대학당국의 의도이고 “학생권”이라는 단어로 집약되어 주장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치권 축소의 움직임에서 착목할만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칙을 들이밀며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칙을 만드는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학칙을 해석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과정또한 무작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자치권과 교육주체로서의 권리또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자치권탄압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학운

영위원회 건설과 대학운영위내 학생참여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볼 수도 있다.

3. 자치권 탄압에 대한 투쟁의 전제

자치권축소가 하나의 경향이라면 이에 대한 반대의 흐름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에 공분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치권탄압 반대”라고 투쟁의 구호를 상정했을 때 각 학교마다 탄압의 양상이 다르고 ‘자치권’이라는 개념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요구하며 싸움을 가져갈지가 명확치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기에 ‘자치권 탄압 반대’라는 구호를 내건 투쟁은 일개 학교의 투쟁이라 할지라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전국대학의 공동투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렇다. 하기에 ‘자치권 탄압’에 대한 투쟁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다른 권리들을 주장하는 속에서 가능할 수 있으며, 공동의 투쟁을 가져간다고 했을시에 공통의 이해와 요구지점을 발굴해야 한다는 당연한 투쟁논리를 다시 한 번 짚고자 한다. 그리고 자치권탄압이 학생회 간부들 더 정확하게는 학생운동진영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고된다면 일반 학우대중들의 이해와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권이 축소되고 있는 지점에 착목해야 하고 여기서 자치권의 확대요구도 해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당장에는 각 학교마다 진행되고 있는 탄압의 사례를 통신공간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해 타학교에서 성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 등을 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마다 대학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축소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례 그러려니 하는 태도는 자본과 대학에게 유리한 고지만을 제공할 뿐이다.

4. 대학사회 학생권 확대를 위한 행동과 연대의 자치

학생권의 확대는 어느 한 운동단위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 단위만의 경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학생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기에 학생권은 대학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 스스로 의식적이고 민감하게 제 권리를 발굴해가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다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권은 발굴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치운동은 언제나 구호로서만 혹은 억압에 대한 즉자적인 저항으로서만 존재해왔다. 어느새 자치는 선거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주요한 레테르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학생자치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실현가능한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 자치는 본부와 교수,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 현실화되었을때만, 이전의 '학원자주'의 대응으로써 등장했을 뿐이다. 학생은 자신의 자치권을 언제나 침탈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었다. 자치는 동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부드러운 단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자치'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형해화되어 왔다.

자치를 위한 저항 그 자체,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은 전정 단 현순간도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없이는 자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보여준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이 즉자적이고 수세적이었던 데 있다. 즉자적이고 수세적인 자치권 수호의 한계는 명확하다. 열린 공동체 내부의 자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성원리,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즉자적이고 수세적인 자치운동은 공허해지고 만다. 우리는 수호해야 할 자치권이 무엇인지 모르며, 왜 그렇게도 자치권이 소중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치권은 수호될지언정 구성되거나 주장되지는 못했다. 외부의 파시즘을 상대로 한 투쟁은 항상 내부의 파시즘으로 인해 저지되고 악화된다. 사실 외부의 파시즘과 내부의 파시즘은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은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중략) 학칙제정투쟁이 권위사회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자치규약제정운동은 학생공동체 내부의 자치질서의 구성을 위한 운동의 과정 자체이다. 전자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는 운동이라면, 후자는 공동체의 전화와 재구성을 위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다. 전자가 성폭력에 관한 여성적 담론을 보편적 가치로 세력화하고자 하는 입법투쟁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우리 삶의 전변을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경종과 처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둘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에서 서로의 공백을 메우고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Critic 7 "성폭력학칙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中 -

행동과 연대는 현재의 자치권탄압과 대학교조조정에서 보여지는 교육주체로서 학생들의 권리축소경향에 주목하면서 학생권 확대를 위한 하나의 자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그것은 "축소되어가는 학생권 확대를 위한 학생자치규약 제정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제안은 위의 인용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의 문제의식, 즉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발굴하고 찾아 나간다는 데서 출발한다. '즉자적이고 수세적인 자치운동', '자치권은 수호될지언정 구성되거나 주장되지는 못한' 자치권탄압투쟁이 가지는 인식과 실천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운동전영 또한 무더져가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고민하고 앞으로 민감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동시에 학생회 간부들에게로 가해지는 자치권탄압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학우대중들의 공분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치권탄압이 비단 학생회 간부나 학생운동전영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폭로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모습으로써의 자치규약이 학우대중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이 중심되게 놓여져야 할 것이며 1년간 이렇게 구성된 자치규약을 지켜나가고 이후에도 대학의 탄압에 이렇다할 명분으로써 자치규약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규약제정운동이 갖는 한계는 그 자체로 아주 자족적인 운동⁴⁾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캠퍼스에서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를 가질 뿐이고, 중요한 것은 앞에도 언급하였듯이 학우대중들에게 폭로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실천과 인식이 중요하다. 즉 자치규약제정운동을 전개하는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공분을 모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자본과 대학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학생자치규약이 갖는 의미

현재 대학사회 구성원들내에 존재하는 규율은 학칙이 존재한다. 학생들내에도 학생회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학생회 골간의 설명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지금도 보여지고 있듯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표현되어 있는 개념들도 모호하여 분석하고 적용하는 의도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하며 이것이 학칙을 빌미로한 대학 구성원 탄압의 요건이 된다. 학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대학의 전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행동과 연대에서 주장하는 '자치규약'은 학생들내의 '자치적' 규약이다. 여기서 남는 문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러한 자치규약제정운동의 과정이 아주 충분히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논쟁되는 형태라야 하는 것이고, 학생자치규약이 제정된 이후 이를 학생사회내에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어떠한 해결의 과정내지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몇천, 몇만이 되는 캠퍼스에서 대중적인 공분을 모아나가는 과정또한 쉽지않은 많은 과정이다. 진정으로 학생사회내에 '자치적'인 규약으로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해 '대중적'은 자치규약의 생명이라 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해서 과학생회 차원의 자치규약제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캠퍼스 존재하는 대중운동단위들과 함께 자치규약제정운동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학생자치규약제정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4) 권익에서 성폭력학칙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권익뿐만이 아닌 대학사회에 불을 이루었던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가졌던 의미는 단지 학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규약을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권익의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학칙제정을 위한 협상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학칙제정운동이 가졌던 의미성, 즉 자치규약으로서의 중심이 탈각되어가고 대중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6. 축소되어가는 학생권 확대를 위한 다면적 투쟁을 제안한다!

1) 각 학교에 학생자치규약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우선 행동과 연대에서 자치권 탄압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취합해보고 모델링으로 자치규약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각 학교별로 자치권탄압에 대한 사례와 함께 각 학교의 자치규약을 만들어보는 계획을 올해를 바라보면서 가져갔으면 한다. 이를 각 캠퍼스 어떻게 실행 흐름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도 수반되어야 한다. 자치규약이 학생들의 자치규약으로 자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함께 주장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치규약제정운동만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다만 각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치권 탄압에 대응하고 대안적으로 학생들의 권리주장의 모습을 만들고 보여주자는 의도인 만큼 각 학교에서 학우들의 동의지반과 함께 각 단위에 맞는 쟁점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게 각 캠퍼의 일정 속에 놓여져야 한다.

2) 강좌사업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의 대학운동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대학구조를 거부하고 우리들에 의해 새로운 교육적 가치와 질서를 창조하려는 운동이며, 일상에서 교육과 학문을 재기하고 비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대안적인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이다.(교육운동연대회의의 소식지 『우리는 행동한다』 2호 ‘또 하나의 대학운동’)”

위의 내용과 함께 제2대학운동을 평가하며 강좌사업만이 아닌 ‘자율적인 규범’발굴과 여러 교육과 학문 재편의 문제제기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 이러한 또 하나의 대학운동의 실험이 대학 교육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천을 전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⁵⁾

예기코자 하는 것은 행동과 연대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축소되어가는 학생권 확대를 위한 자치규약 만들기 운동’의 의의속에서 함께 전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안이다. 몇 년전부터 학생들내에 자체적인 강좌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적 사업으로 그치며 교육의 일주체로서의 권리로써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학문을 구성해보고 수평적인 교육방식과 교육주체들간의

5) 자세한 내용은 교육운동연대회의의 소식지 『우리는 행동한다』 2호 “또 하나의 대학운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권 확대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으로 강좌사업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이후 강의개설권까지도 주장되고 이를 위한 실천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이라는 곳을 알아가는 새내기들에게 학생들의 권리로써 대안적인 교육과 학문을 구성해보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제정'을 제안합니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내의 자치규약의 제정과 공동체문화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이 현실화되는 첫 번째 실험이 될 것이다. (중략)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에서 '학칙'은 두가지 측면을 포괄한다. 하나는 교수사회와 대학본부를 포괄한 법률에 준하는 학칙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공동체 내에서의 자치규약이다. (중략) 학칙제정투쟁은 냉정하게 말해 대중의 대규모적인 동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실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학칙제정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운동과정을 낳을 수 있다. 학칙제정투쟁과정에서도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진행되어야 하며 운동의 과정자체가 성과를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략) 자치규약은 명확히 그것의 제정자체보다 제정을 위한 과정과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자치규약이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대중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자치규약운동은 대중들의 자발적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시켜야 한다. - Critic 7 "성폭력학칙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中 -

위의 인용문은 행동과 연대에서 진행되는 자치규약만들기 운동이 어떠한 의미들을 갖는지 또한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작년 학생운동진영 내에 쟁점중의 하나가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하반기 두학교 총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더욱 쟁점화되었다. 그럼에도 왜 성폭력학칙제정이 필요하고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왜 전개해야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그 인식의 기반이 학원사회에서 부족해보인다. 이는 두 학교 총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보였던 미숙함이나 대중들의 반응들을 말하는 것이다.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운동진영에서조차 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 6) "성폭력문제해결의 원칙은 공개사과와 재교육이다. 공개사과가 갖는 의미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둘째, 공개사과는 가해자가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이를 반성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해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 가해자의 진실한 공개사과를 통해서만이 사회적 성폭력과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실현했던 가해자는 분리될 수 있으며 이로써 사회적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시작될 수 있다. (중략) 처벌은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 인격에 대한 처벌이 아닌 사회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 (Critic 7 "성폭력학칙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中) 사실 두 총학생회장의 성폭력 문제해결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사건을 수습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원칙을 충실히 하지 못한 지점 또한 평가할 부분이다.

여성 또한 대학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체이나, 여성으로써의 권리는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더욱더 침해되어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는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학생공동체내의 자율적인 규율로써 성폭력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캠프에서 자치규약을 만드는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각 캠프의 여성운동 단위나 다른 단위에서 캠프내 자치규약과 별도로 내지 학생자치규약내에 함께 구성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행동과 연대의 자치규약 만들기 운동과 흐름을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7. 자치규약 만들기로 가는 과정

■ 학생권리선언운동 : 축소되어가는 학생권 확대를 위한 자치규약제정운동

>> 1주 사전선전전

각 캠프에서 자치권탄압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나가는 시기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자치활동을 제약하고 탄압하고 있는 양태를 문제제기하며 자치규약의 문제의식이 강조될 수 있어야 한다.

>> 2주 자치규약제정선포주간

왜 자치규약제정운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최대한 알려나가는 주간이다. 유인물이나 선언운동 등의 형식으로 학우들을 최대한 접촉하면서 알려나간다.

>> 3주 Anti 학칙주간

- 학우들이 만드는 자치규약응모 : 상품으로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학생권이 주워집니다.
- 대학사회에서 느낀 권리탄압의 사례응모 : 상담소나 자유발언대, 응모함을 설치
- 자치권탄압반대와 학생권 확대를 위한 OO학교 선언대회

>> 4주 만인의 자치주간

- 게릴라 자치(말이 되나?)를 진행해본다. 학내 벽보그리거나 백지스티커를 학우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바라는 자치규약의 내용을 적어서 학내 곳곳에 부착하는 것등이다. 교육현장, 자치현장 만들어보기, 학내 곳곳에 벽보로 부착해보기 등등.
- 자치규약 응모를 계속 진행한다.

>> 5주 자치규약제정을 위한 총투표 주간

- 자치규약제정안을 알려나가며 총투표를 진행한다.
- 자치규약제정단 모집한다. 이들은 가장 주요하게 학내에서 자치규약이 학생들의 자치규약으로써 인정될수 있는 논의테이블을 제안하고 대학당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단위이다.

>> 6주

- 제정단을 중심으로 학교측에 자치규약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제안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한다.

>> 7주

- 학교측의 반응에 대한 선전과 함께 앞으로 학생들은 자치규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정리.

* 이러한 대중적인 작업과 함께 캠프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우들이 제기한 자치규약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규약 제정단을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자치규약제정운동을 알려나가는데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 학생회나 총학생회 단위가 아닌 대중운동 단위들이 준비해서 진행해보거나 학생회단위를 강제해서 같이 진행해보았으면 한다.

* 찬우물 이벤트 게시판에 '자치규약제정운동'방이 개설되었다. 이 공간을 통해 자치권탄압의 사례들이 총화되고 자치규약제정운동이 학원사회에서 실물화해낼 수 있는 시발이 될 수 있겠다.

■ 학생사회에서 자치규약의 위치

어느 한 단위의 자치규약은 그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 구성원들의 동의과정을 거쳐 그 단위의 자치규약으로 자리했음지라도 자치규약이 단위 구성원들내에서 어떤 위치와 얼마만큼의 위력을 갖는지에 대한 구성의 작업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약'이라는 말이 가지는 효과는 구성원들에게 강제의 의미이고 규약을 어겼을시 어떤 징벌이나 제약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규약이 '자치규약'으로 단위에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동의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자치규약을 구성원들에게 강제하고 강요하기 위한 기계나 수단이 아닌 단위에서 '자치'규약으로 자리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8. 글을 마치며



앞의 두 제안은 '행동과 연대'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운동단위들간의 활동제안과 연대의 노력은 항시적으로 제한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위 섞인 주장도 해본다. 동지들의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자본과 대학이 학생권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학생들은 학생권을 생성하고 확대하려는 반경향을 조직해나가야 하며, 새내기들에게 대학이 무엇이고 그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듯이 학생권을 생성, 발굴, 확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생자치규약제정운동을 진행하자. 이는 정권과 대학당국의 학생들에게 가하는 권리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학생운동진영이 학우대중들에게 '자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앞서 이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니 진정 '자치적'이고자 하는 의지를 학우대중들에게 그리고 남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 출발을 학생자치규약제정운동으로부터 시작하자.

학생자치규약 해설안

제 1장. 대학 내에서의 자치

1. 대학현실 인식

현재의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 '진보와 낭만이 넘실대는' 그런 곳이 아니다. 대학은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경쟁력 제고 및 시장논리에 맞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형식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대학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학은 사회적 모순을 그대로 혹은 일정정도의 변형태로 담지하고 있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 내 구성원들의 권리는 대학당국 및 정권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인해 축소 혹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 내 학문은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지식/ 학문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여기서 양산되는 과학기술은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조차 가지지 못하면서 "세계에서 몇 번째"라는 서열을 자랑스러워하는 미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학 내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구조화되어있음으로 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2. 대학 내 학생들의 위치

남한 사회의 학교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위치로써 규정되고 있으며 어떠한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내 학생들은 철저하게 수동적, 체제 순응적인 주체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제정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해, 학부제 시행이후 더욱 열악해진 교육환경에 대해, 대학도서관(10시 이전에 퇴실) 및 대학 내 시설물 이용(학생회관 사용제한)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 대학 내 언론의 자유가 학교당국에 의해 일일이 검열(대학언론 탄압 및 대자보 검열 등)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학교 내에 자리하는 복지시설은 업자와 대학당국간의 밀실행정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면서 교육제도 및 사회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체제유지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간에 위계화 또한 대학 내 자리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권리는 학생들의 대의기구인 학생회를 통해서만 간간히 언급되고 있을 뿐, 대학 내 민주주의 및 자치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3. 자치

'자치'란 그 어떠한 위임과 대행을 거부하고 중심된 권력이 형성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구성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사유 및 행위를 말한다. 즉, 권력이 구성원 모두에게 분산되는 방향을 꾀하는 것이고, 대의제를 극복하는 것이며, 어떠한 억압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으로써의 당연히 구성되어야 할 권리의 모든 것이다. 덧붙여서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려는 공동관리 체계의 구성으로 외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끊임없는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

▶ '자치'는 일체의 학외권력에 대하여 대학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자치는 어디서부터 오든지 간에 모든 재정상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예산권을 가지고 관료적인 일체의 간접적 압력과 싸우기 위하여 행정권을 가지고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교육의 틀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는 그 자체로써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특히 자기를 형성시킬 수 있는 진정한 공동관리를 가능케 한다. 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치가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이다. 그것은 대학내부 권력의 분산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대학을 제도화하며 기구권리의 책임을 창조해낸다.

- 1968년 5월 17일 파리대학 법학부 <자치와 공동관리> 위원회의 보고 -

4. 학생, 그리고 학생권

사회, 더욱이 대학에서 학생의 신분은 미성년자이고 피교육자로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대학이라는 '특권화'된 의식 속에서 우리는 교육자에 의해서 주어진 지식들을 머리 속에 주워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책임이자 권리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불순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단절하고 지향하는 바로서 명시되고 있는 '학생권(학생권력)'의 문제의식은 '대학인'이라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주체호명과 지식의 재생산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학생권 확대

여기서는 학생권의 개념을 교육권, 의사결정권, 사회적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본 학생자치규약은 학생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교육권, 의사결정권은 제 2장 '대학 내 구성원 간의 관계' 중 '학생권'에서 주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은 제 3장 '대학의 역할', 그리고 11번 해설부분 '대학과 학문의 사회화'에서 주되게 언급되고 있다.

『프랑스 5월 혁명』 1985.5, 백산서당/ 교육운동연대회의 소식지 “우리는 행동한다” 2호 「학생권 자치와 민주주의」 참고

5. 자치규약제정

대학 내 구성원들의 권리는 제약되고 한정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끊임없이 발굴되고 발명되는 속에서 대학에서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적으로 많은 제약과 조건이 뒤따르는 것은 대학외부에서의 억압이며 탄압의 일환이다. 이러한 권리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기주의로 비취지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권리행사에 익숙치 못한 원인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방의 가치만이 인정되는 체제유지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일 수 있다.

대학 구성원들간의 자율적인 조정, 통제가 가능하다는 기본전제가 통용되어야 하며 그런 속에서 대학 내에서부터 이러한 권리에 대한 담론이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한다. 현재적으로 통용되는 권리 이외에 제도를 넘어서 구축하고자 하는 질서 및 관계형성은 대학 구성원 스스로 '자치'스러운 주체로 재구성될 때라야 가능하다. 학생자치규약은 이러한 대학 내 새로운 관계 및 유대형성에 적극 복무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자치규약 제정은 절대적인 소수자(Minority)로 존재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기존의 억압적 학교제도와 사회인식 속에서 묻혀있었던 권리들을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리해야 한다.

또한, 정권 및 학교당국에 대한 학생자치권에 대한 탄압 및 침해에 대해 선차적으로 자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학생자치규약을 통해 전개해나가면서 더 이상의 탄압 및 침해를 봉쇄하고자 하는 측면을 현재의 학생운동 탄압의 양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제 2장. 대학 내 구성원간의 관계



5. 대학 내 구성원들간의 올바른 관계 구축

대학은 공동관리 체계를 가져야 한다. 대학 내의 (학교당국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권력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산된 권력들이 대학 안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공동활동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공동관리 개념의 정착 1.

대학에서의 구성원들간의 관계는 자치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좁게는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본다면, 어느 사회기관 못지 않게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임은 명확한 것 같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는 강의, 시험 등의 기제를 통해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관계가 자치와 민주성에 기반한 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의 전제는 대학은 위에서 말한 사회비판적인 발전의 초석에서 대학에서 유통되고 있는 강의나, 시험의 기제가 전부기 아니라는 점, 대학은 사회를 재구성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이 사회로 재생산되는 역할을 주되게 가져가는 '공동체'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이 안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공동체의 질서에 맞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교육비를 내는 자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대학의 제자리찾기 >

6.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자치규약

우리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 내 구성원들간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스스로 성폭력을 방지, 규제, 해결하기 위함이다.

성적 자율권이라 함은 자기 몸에 대한 권리(결정권)이며, 이는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의 의미를 포함하여 여성이 성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확장된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이다.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동과 요구 및 기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한다.

환경적 성폭력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생

학생권 확대

활적, 교육적) 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의 성폭력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결정이다. 이것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근절과 처리를 위한 규약(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임)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 전 대학사회 구성원의 성적자율권 확보와 모든 성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의 정의 및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 징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성폭력의 정의)

①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②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자율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 ㉠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존경권을 침해하는 환경형 성폭력 역시 이 규정에 적용된다.

㉡ 개인의 학업 평가, 고용, 인사 등의 공적인 생활에서의 성차에 따른 부당한 차별 역시 성폭력으로서 이 규정에 적용된다.

③ 성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별도의 규정집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00대학교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시간강사와 기성회직을 포함하는 모든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모든 학생이 포함된다.

② 가해자만이 ①에 포함될 경우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③ 피해자만이 ①에 포함될 경우는 가해자 측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④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 4 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 보호가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②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과정에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 ㉡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및 거부할 권리
- ㉢ 필요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 ㉣ 사건해결을 위한 전달기구와 관계규정을 선택할 권리

④ 성폭력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제 5 조 (신고와 신고기구)

①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100대학교 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에 신고한다.

② 기타 교수 대표기구, 교직원 대표기구, 각 급 학생회, 학내 여성단체, 성폭력관련상담소(외부단체) 등에 들어온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상담실에 신고되어야 한다.

제 6 조 (신고인과 신고인의 보호)

①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제 4 조의 피해자 보호에 준거하는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적용시한)

① 적용시한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이 규정의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시한제한 없이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발생했으나 미해결된 사건의 경우 역시 이 규정에 적용된다.

제 8 조 (전담기구)

① 상담실은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사를 수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담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심의 의결한다.

③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집행한다.

④ 상담실 및 상담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 (징계)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된다.

② 상담실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징계의 경우 직접 다음과 같은 징계를 집행할 수 있다.

- ㉠ 실명 공개 사과



학생권 확대

- ㉠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 상담소 등의 성폭력 및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활동
 - ㉢ 피해 배상
 - ㉣ 대자보, 언론, 공문을 통한 경고
 - ㉤ 기타
- ③ 징계의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실의 징계 수위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집행한다.
-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 ㉡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 :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 ㉢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 ④ 가해자가 명백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 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엄중 처벌한다.
- ⑥ 모든 징계 결과는 정해진 장소에 1주일간 공고한다.

제 10 조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그 동조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1 조 (00대학교 성폭력 상담실 설치)

- ①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② 상담실 실장은 성폭력 상담 전문가로서 '00대학교 성폭력 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

- ① 성폭력 상담실은 총장 직속 기구이다.
- ② 성폭력 상담실은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고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
 - ㉢ 경징계를 집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을 하는 일.
 - ㉣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일.
 - ㉤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제반 대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일.
 - ㉥ 기타

제 13 조 (상담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해당징계위원회에 집행을 요구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상담실장이 겸한다.

③ 운영위원은 상담실장과, 같은 수의 교수대표, 교직원대표, 학부생대표, 대학원생대표, 그리고 그 밖의 책임자와 전문가들로서 전체적으로 여성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④ 해당 안건의 특수성에 따라 상담인등의 관련인을 임시 운영위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논의를 통해 특정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 차후에 다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14 조 (보칙)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담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② 상담실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7. 생태친화적 대학사회 건설

18, 19C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주의를 낳았으며 이 산업주의를 기반으로 생산력주의 즉, 생산력 중대가 삶의 질을 보장해준다는 사고가 팽배하게 되었다.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생산력주의는 결국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원고갈과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자체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생산력주의를 표방한 사회체제의 변천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켰다. 포드-케인즈-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의 양식을 생산력주의의 최극단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사회 또한 자본주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학교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대변이라도 하듯 대학은 자본주의 속에서 하나의 소비계급을 형성하는 진지로서 사고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문 또한 자본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체제순응적 주체양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자연지배 사상과 성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사회조직

학생권 확대

원리 등 지금의 지배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생태친화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심으로 사고해야 할 핵심이다.

▶ 대학을 생태적 가치로 무장된 진보적 진지로 구축하자

- 생태친화적 Campus만들기

대학이 소비문화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대학은 그것의 특수한 조건을 활용해서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재생산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대학생의 소비문화는 하나의 소비계층인 대학생들을 생산해냈고 이것은 대학사회 내에서 자본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 Green Cup 운동

이런 측면에서 이전에 제기되었던 Green Cup운동 등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컵의 문제가 아니라 종이컵 소비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편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적 생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실천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교내 차량문제

교내 차량문제의 경우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배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자동차 매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점점 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흔히 캠페인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리수거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새로운 생태친화적 생활양식을 구축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 생태친화적 가치의 진보적 진지로서의 구축

전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골프장, 소각장, 발전소 등 인류의 편의를 주장하는 시설들은 인류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양태로 건설되고 있다. 98년도 관악에서 진행되었던 과학상징운동이나 지역적 연대의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하는 '에너지를 만중에게로', 학생위원회의 예는 대학의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8. 장애우들의 인권

장애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삶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개인의 자주성과 주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해 성적 학대를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 정신적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장애우들이 자력으로 요구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각 영역의 사람들(대학생, 특수교육, 각종 재활영역, 의료, 보육, 사회복지 등)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를 대변해주



고 이것을 제도로써 뒷받침해야 한다.

▶ 장애인 인권회복과 사회복지 시설의 민주화를 위한 권리선언 참조

< 학생권 >

9. 대학교육이념/ 목표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의 교육이념/ 목표는 현 정권과 교육부의 이해와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형태가 아닌, 대학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해/ 동의지반 하에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이념 및 목표여야 할 것이다.

▶ 일방적인 대학교육이념/ 목표의 폐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히 여대의 경우 여성전문인/ 교양인의 양성 등등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몰아매는 교육목표 및 교육이념들. 이것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오기 전, 아니면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자신을 규정하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제기를 해본다.

교육이념/ 목표란 무엇인가? 교육이념/ 목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우선 대학의 교육이념/ 목표란 그 대학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향이며, 후자에 대한 생각은 전자의 연장선에서, 대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 교육이념/ 목표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과정을 모두 생각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이념/ 목표는 자본주의사회가 강요하는, 혹은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현 정권(교육부)의 입김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즈음해서 각 대학별로 대중평이 실시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각 학교의 교육이념을 암시하도록 강요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았다. 각 학교의 특성화 전략이 충분히 녹아나고 있지도 못하면서, 또 대학 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의받고자 하지도 않았으면서,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대학별로 조건도 다르고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부위도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념을 보면 하나같이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볼 때, 과연 현재의 대학이 사회로부터 비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학의 교육이념은 이렇듯이 (20 : 80의 사회에서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이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

이제는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대학내 구성원들의 논의 및 동의절차를 통해 바꾸어보자. 그리고 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위상을 교육이념 속에 담아내고 타 학교와의 차별지점을 분명히 하자.

학생권 확대

“기능위주의 학문보다는 사회의 진보에 적극 복무할 수 있는 학문을 육성하고 경쟁의 원리보다는 공존의 원리를 대학생들을 통해 체득해나가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의 00대학인이 되자!!!”

10. 학교당국 및 정권에 의한 학생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율성, 즉 공동관리의 테두리 내에서 책임수행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전제가 명확하게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학칙은, 학생들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대학 내 구성원들간의 동의절차를 통해 철폐되어야 한다. 대학 내 구성원으로써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대사회적인 발언, 정치활동에 대한 일체의 억압 및 탄압에 대해 반대한다. 이의 일환으로 교육부, 학교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지도대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활동의 하나로 대학 내 언론에 대한 자율권을 주장한다.

▶ 학교당국 및 정권에 의한 학생권리 침해

대학과 사회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입장도 기질 수 없다는 것이 대학의 방침이며,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정권의 방침이다.

- ▷ 학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집회허가원은 학생과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반드시 1주일 전에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학내외에서 학생이 광고 및 인쇄물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과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외부에서 부착한 게시물의 부착에 있어서도 이에 준한다.
- ▷ 학생으로서의 대회운동경기 또는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학생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없이 외부 단체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위의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학의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대학에서의 학생활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며 순응적인 주체로 길들어지는 과정이 전부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쉽게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캠퍼스 이용안, 동아리 지도교수 승인제, 학생활동 지침서, 학사관리 강화, 학생회관 사용제한 등등.

11. 대학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 교육적 행위는 대학 외부에서의 일방적인 원칙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사회로 환원되는가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 내 교육을 통한 지적차이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 지적차이가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면서 현재 우호적인 지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정해지고, 근대사회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종속성을 형식적으로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간의 사적인 관계처럼 재생산되는 집단적 불평등관계 속에 각인되어 왔다. 교육을 통해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한, 교육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써 작용될 수 없고, 교육을 통한 인간 사회의 진정한 자치, 권리실현은 불가능하다.

대학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이분법적인 경계선을 해체하고 대학이라는 공동의 공간 속에서 지식을 재생산하고 사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이 속에서 학생의 위치 또한 피교육자의 위치에서 대학의 학문을 자유롭게 구성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위치로 재각인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은 자신의 교육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기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교육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의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논의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의제를 선택함과 동시에 강의를 신설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강의실 안에서의 학습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장과의 자유로운 소통 및 민중연대의 실현이 대학 내 교육과정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 대학과 학문의 사회화

대학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음과 동시에 기업으로의 노동력 배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모순된 현실은 위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결정의 권한을 확보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연계와 교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사회화의 다양한 방식들을 발굴하고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문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교수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재생산/ 재구성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함께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인 사회화의 형태로는 먼저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 사회에 어떠한 가치로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윤리적 기준조차 설정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양성은 환경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실습강의의 확대(기업으로의 예비노동력 착출에 불과한 산학협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의 활동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의 학점화 등의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12. 대학행정에 대한 학생참여 권리

소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대학행정에 대해 반대하며, 대학행정의 학생참여와 결정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재정에 대한 권리로써, 대학재정의 공개를 학교당국에 요구한다.

▶ 공동권리 개념의 정착 2.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자치규약제정”의 발전적 모색

들어가며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과 학칙의 필요성은 아마도 여러 학내에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내에서 이미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가시화 되었고, 그에 비례해 쉬쉬하고 있거나 묻혀져버린 사건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방지를 위해, 나아가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인식지반 마련에 있어, 성폭력 자치규약은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규약의 필요성은 다들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키고 제정해나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글은, 서울대 인문대 자치규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현재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규약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약속하는 글이다. 미약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인문대 자치규약 제정과정

98년 4월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인문대 학생회칙>이 제정되었다. 인문대 학생회의 “자치규약 제정 과정 및 사후 논쟁에 대한 평가글”(뒤의 참고글로 실었으니 꼭 읽어보시길)에서 서술되지만, 대략적으로 제정과정을 요약하도록 하겠다. 당시 학생회는 성폭력 자치규약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자치규약 안을 작성하고 논의하기는 역량상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당시 인문대 여학생 모임인 여우방에, 자치규약을 만들고 그것을 전체인문대학생대표자대회(이후 전인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여우방은 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상태였으므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학생회 단집 한 명과 여우방 성원들이 공동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참가한 단집 주체는 당시 학생회 내에서 이미 연대사업국을 맡고 있었으므로 자치규약 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학생회와 연결끈만 간신히 이어주는 수준이었다. 그리하여 이후 과정에서, 자치규약 가안을 작성하고 자료집과 자보를 작성하고, 전인대회에 가안을 발제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들은 여우방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게 되었다. 자료집 배포 등의 활동에 있어서는 학생회가 함께 하였다. 여우방은 여성운동모임이 아니라 사실상 학술을 주로 하는 공동체에 가까웠으므로 활동들에 어려움을 겪었다⁷⁾.

성폭력이란 대학 사회 내의 구성원들에게서 실제적으로 표출되는 문제지점이며, 학생 사회내의 많은 성원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생회는 마땅히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을 주요사업으로 가져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한다. 물론 성폭력 근절과, 그를 위한 자치규약과 학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성운동 진영에서 먼저 문제제기 되고 꾸준히 실천해왔지만, 실제적인 제정운동은 학생회와 여성자치모임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온전히 벌여낼 성질의 것이다. 역량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치규약 제정 과정과 이후 논쟁과정에서 학생회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소극적이었음을 짐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자료집이 각 과방에 배포되었으나 읽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과장들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중요함이나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에서 이에 대한 논의나 토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대 차원의 토론회나 공청회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⁸⁾. 그런 상황에서 전인대회가 열렸고

7) 이 때 여우방 내에서 학생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이 만연하게 되었다.

8) 성폭력 자치규약이 단위내에 성폭력 문제를 환기시키고 담론을 재구성해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이것이 전혀 이

학생권 확대

자치규약 자체를 통과시키나 말것이나의 문제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자치규약 가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고, 발제된 가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사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 전인대회 자리에서는 가안을 제출한 여우방 이외에 자치규약을 만들고 논의할 만한 문제의식이나 능력(?)을 가진 주체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문대 자치규약은 첫 번째 예의 국문과 성폭력 사건으로 비로소 인문대인들이 존재여부를 알게 되었다. 대중적인 논쟁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논의보다 '공개실명사과대자보'라는 형식에 대한 반발이나 여성모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대중적인 논의 없이 제정되고 '강행된' '자치'규약의 문제점과 한계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었다(이는 학생회 평가글에도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논의는 그 내용 성격상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시기상으로나 논의 진행상으로나 늦어져서 참가한 사람이 몇 되지 못했다.

현재의 상황

이후에는 자치규약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실상 死法에 가까운 정도이다. 자치규약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인문대 학우들은 자신이 직접 고민하고 지켜나가야 할 '자치규약'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는 어찌보면 자치규약 제정 과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치규약의 내용과 조항 자체를 알려낼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17대 인문대 학생회는 1학기에 자치규약을 홍보하고 2학기에 자치규약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규약 자체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상당히 부실하므로, 많은 부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 8조 (징계과정 및 내용) 강제적 징계사항은 사건 공개 및 공개 사과문 게시의 명예형으로 한다>는 강제적 성격이 거의 없는 자치규약에 어울리지 않는 조항이다.

자치규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서 제안한 <대학사회의 성적자율권 확

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실상 자치규약의 의미가 거의 훼손되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보를 위한 학칙> 가안 내용을 참고로 하여 대략 약속해보겠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자치규약이나 학칙에 관련한 여러 자료집들을 참고하면 좋겠다.

1.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 자유롭고 인격적인 관계 확립, 성폭력 사건 예방 등의 목적을 설명한다.
2.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규정과 구체적 예시(언어적/비언어적/물리적 성폭력) 등이 필요하다.
3. 성적 자율권(혹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4. 2차적 성폭력에 피해자가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식사항 비공개와 필요한 시기에 대리인을 세우는 등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둔다.
5. 신고기구 설립과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
6. 가해자 징계와 재교육

등등이다. 위에 든 6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그 외에 자치규약의 대상이나 성폭력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동조자 징계 등등은 구성원의 인식정도나 단위 상황에 맞추어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치규약!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자치규약은 양산될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당장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 단대나 전체 총학 단위까지 올라가면 자치규약은 사실상 '자치' - '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지킨다' - 의 의미가 상당부분 탈각된다. 그리고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단위의 구성원들이 '나의' 혹은 '우리의' 자치규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치규약은 死法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인문대 2천(관악공대는 5천이다)의 학우들이 함께 조항을 만들고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특히 인문대 자치규약은 위에 밝혔듯이 대중적인 토론을 벌이거나 총투표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전인대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자치규약의 의미가 자치단위 구성원의 삶과 생각들을 능동적으로 이야기하고 바꾸어 가는 것에 있다고 볼 때, 인문대 자치규약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자치규약이 아니라 '학칙'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치규약은 실상, 과나 동아리, 혹은 그보다 작은 단위-학회

9) 교수사회와 대학본부를 포괄한 법률에 준하는 학칙과 학생 공동체 내에서의 자치규약을 구분하자. 학칙은 규정으로 쓰이기도 하며, 자치규약은 학생회칙으로도 명명되지만, 이 글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칙과 자치규약이라는 단어로 통일했다.

학생권 확대

등에서 만들어질 때, 그 의미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나 동아리, 그보다 아래의 단위에서 자치규약을 제정하기란 아직도 대부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여전히, 단대나 총학 단위에서의 자치규약 제정의 의의가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학칙 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성폭력 박물관인 대학에서 피해자가 도움받을 곳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자치규약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규약은 제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치규약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의 개념이나 대처방식에 대한 논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단위 내의 담론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인문대 국문과는 98년 가을에 자치규약 조항을 만들고 총회와 총투표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공개설명사과대자보의 방식이 인권 문제를 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4월의 자보논쟁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담론 수준이다). 그러나 과 내에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담론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학생회가 새내기 대상으로 성교육학교 등 사업들을 만들어나가고 다시금 자치규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비해 OO과는 97년쯤에 과에서 관심있는 주체 하나가 조항을 생산하고 총회에서 발제를 했다. 별 고민이나 논의없이 의결되어버린 결과, 거의 대다수가 자치규약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인문대 자치규약 제정 상황과 이 점에서 일치한다). 이를 볼 때, 제정 여부와 관련없이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치규약 제정 방식에 대한 조언

자치규약 제정 방식은 총투표나 혹은 대표자회의에서의 의결, 서명받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토론회나 공청회를 전제로 해야 한다. 관악 자연대의 경우 자봉단을 꾸리고 총투표를 실시하여 자치규약을 제정하려 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좌절되었다. 다음은 당시의 평가글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일부분을 뽑았다.

.....이러한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할 점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었나 한다. 특히나 총투표 당일에 가서 우리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진정 문제가 된다. 총투표를 성사시키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점, 따라서 50%의 투표율을 넘기는 것이 지상최대의 목적인



양 '생각없으면 반대표라도 찍어'라고 서슴지 않고 말했던 점, 총투표라는 거대한 이름 속에 매몰되어서 그 공간을 성폭력에 대해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운동의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때
양 다만 '투표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라고 말하듯이, 학우들을 주인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이름뿐인 기만적인
자치운동의 표본을 보여주고 말았다는 점 등이다.

특히나 가장 나중에 지적했던 점은 우리의 이번 운동에서, 실은 학생회칙 제정운동을 제기하면서부터 가장 문
제시되었던 것이다. 학우들을 대상화시키는 운동, 학우들에게 선택권을 쥐어준다고 하지만 실은 어느 것 하나 결
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의 운동이었다. --(중략)--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초안의 완성도를 학우들에게 검증받
고 그들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애초의 계획은 거친 일정과 업무 속에서 사라지고 결국 남은 간담회의 모습은 일방
적인 전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때때로 학우들의 예리한 질문과 비판들을 통해 반성을 하기도 했지만 그
반성이 학생회칙 초안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통해 우리는 총투표 당일 날 학우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모습 이상의 초연함과 운동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당당함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총투표를 평가해봅시다. 자연대 여성위원회장의 평가를

사실 총투표라는 방식도 성폭력 자치규약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이콧 등으로 인해 위
험부담이 크며, 투표율 자체에 연연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자치규약
제정 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대표자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점은 그 자체의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는
학생사회의 내부상황을 볼 때, 간접민주주의의 방식 자체의 한계가 드러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 제정이 요원하고 피해 학우는 계속 양산되는 상황을 볼 때, 자치규약이 본래의 의미를 어쩔 수 없
이 탈각하고 학칙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앞에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대중적인 공청회와 준비 주체들의 선전 능력 배가, 구성원들의 비판이나 의견을 즉각 어떤 형태로든
수렴하는 기민함을 기반으로 하여 서명방식으로 통과되는 것이다. 현재 관악의 학칙제정을 위한 활동단
계획도 그렇게 운영될 계획이다.

나오며

성폭력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글이라 학칙에 대한 글은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현재 관악에서는 교
직원과 교수까지 대상으로 하는 학칙 제정을 위해, 가안을 확정하고 활동단을 꾸린 상태이다. 학칙을 구
체적으로 꾸리고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된 것도, 그 동안 여성자치모임 등의 운동에 기반하여 관악 여러
단대에서 성폭력 자치규약이 세워지고 또한 관악 전체적으로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종의 분
위거나 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에는 5년이라는 지루하고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 필요했
으며, 그 사이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해자와 여성자치모임들은 백지과정에서 계속 다시 논쟁을 시

작해야 했다.

물론, 자치규약이나 학칙이 세워져도 물론 성폭력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지부진한 해결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고통받는 현실을 줄이고,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개인의 차원을 떠나 공동체나 구성원 속에서 논의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규약은 우리들 각자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성적 자율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들 내부의 투쟁이다. 대학이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진보적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댄어나가길,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 참고글 1 >>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인문대 학생회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치적으로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라 함은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리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성차별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 3조 (대상) 인문대 학생회 구성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해자, 피해자 쌍방이 해당될 경우는 물론이고 어느 일방이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



제 4조 (피해자의 보호)

1. 피해자의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신고 접수 시부터 사건의 조사 및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조사-징계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3.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과 혹은 동아리 학생회 안에서 조사-징계위원회에 참가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 5조 (신고인)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그런 장면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6조 (신고 방법과 신고기구) 신고자는 본인 스스로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서면이나 직접방문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과학생회, 동아리 학생회, 단대 학생회 및 학내 여성관련 단체에 신고한다. 1차 신고접수자는 반드시 조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조

1항 (조사-징계위원회 구성) 사건 당시 쌍방이 속한 과학생회 혹은 동아리와 단대 학생회 담당자 및 관련 단위 여성단체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2항 (조사-징계위원회의 역할)

1. 제 2조에 입각하여 신고접수된 사안의 성폭력 해당여부 판단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3. 피해자 일방만이 인문대 학생회 구성원일 경우, 가해자가 속한 단위와 협의, 중재에 있어 피해자 대리
4. 가해자 징계 및 재교육
5. 피해자 보호

제 8조 (징계과정 및 내용) 강제적 징계사항은 사건 공개 및 공개 사과문 게시의 명예형으로 한다. 기타 징계사항은 상황에 맞게 조사-징계위원회가 권고사항을 제시하면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부가하는 것으로

학생권 확대

로 한다. 단, 조사-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경미한 사안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를 유예할 수 있다. 경고장 발송 후 가해자에 의해 사건이 재발되면 징계에 임한다.

원고 징계사항의 예

1.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의 방법
2. 외부 여성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방법
3.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경우

제 9조 (단대 내 성폭력 담당 기구의 설치) 인문대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학생회 내 이의 책임자를 둔다.

<< 참고글 2 >>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과정 및 성폭력 ‘논쟁’에 관한 약평

인문대 학생회

1. 경과

인문대 학생회는 98년 4월 [전체인문대학생대표자대회](전인대)를 통하여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



한 인문대 학생회칙 제정안(이하 자치규약)을 의결하였다. 3월경부터 인문대 학생회 인자 1인과 인문대 여성동아리 [여우방]의 사전 논의를 통하여 '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안'의 내용은 요 몇해 동안 [관악여성모임연대] 등의 여성운동 단위에서 고민하고 생산해 온 것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초안이 인문대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는 곧바로 전인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전인대 자리에서는 '대중적 논의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박물관과 같은 지금의 대학사회에서 자치규약의 제정은 시급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큰 축으로 제기되었고, 격론 이후 표결에 돌입하기로 결정, 자치규약은 '의결'되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 의결된 자치규약에 따라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대책위가 인문대 학생회-여우방-파가해자측으로 꾸러졌고, 이 테이블에서의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방터에 '공개실명사과자보'가 게시되어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자치규약 제정 과정에 관한 약평

우선 전인대 개최 이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대중적 논의들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치규약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가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규약 제정작업 돌입에 관한 결정과 이후 자치규약안 초안 마련 과정이 대단히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몇가지 쟁점들을 미리 제시하면서 대중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규약에 관한 환기를 한 다음 자치규약안의 내용을 '공모' 등의 형식을 통하여 대중과 직접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여우방과 학생회 집행부 인자가 여모등에서 제안한 기존의 '모범안'을 거의 전제하는 수준에서 초안은 마련되었다. 또한 그렇게 마련된 초안을 가지고서라도 전인대 이전에 대중적으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 역시도 미흡하였다. 예컨대,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 방식, 그리고 자치규약의 강제성 여부등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이었으나(실제 이러한 문제는 전인대 '이후'에 제기되었다!), 대중과의 충분한 공론장 형성을 거치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 자치규약의 '자치'규약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불러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부재라는 문제는 전인대장(場) 안에서 각과 학생회 및 각급 자치단위들의 대표자들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대중단위에서의 초벌적 논의들조차 대체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전인대 즉석에서 '처음으로' 성폭력적 대학문화에 대한 공개토론을 벌이고, 뒤이어 학우들을 '대표'하여 설익은 '의결'까지 하게 되는 회극을 연출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원죄'로서 작용하면서, 이후 벌어진 성폭력 논쟁에서 불거진 자치규약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학생사회의 민주주의와 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나쁜 상황'에 이르게된 근본적 원인은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학생 사회내의 논의지반의 부재라는 문제와 함께, 이러한 논의지반을 만들고 대중과의 싸움을 통해 새로운 대중(저항)주체성을 형성하려는 학생회 운동주체 및 여타의 운동주체들의 주도면밀한 계획의 부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회를 자기형성기반으로 한 기왕(既往)의 운동주체들이 성적 차이에 의한 적대에 대체로 둔감했던 것, 또한 이러한 학생 사회내 반성폭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여성) 운동주체 및 단위들이 인문대 내에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또한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3. 해방터 성폭력 논쟁의 효과

전인대에서의 자치규약 제정 이후 곧바로 게시된 공개설명사과자보(이하 자보)로부터 해방터 성폭력 논쟁(이하 논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논쟁의 구체적인 쟁점들과 진행양상에 대하여서는 평가를 생략하고, 논쟁 과정의 한계와 이후의 효과를 약평하는 것으로 하겠다.

자보는 유예되었던 학생사회내 성폭력의 문제를 한꺼번에 폭발시켰다. 무수한 쟁점과 무수한 입장들로 해방터와 도서관 통로가 도배되었고, 이는 학생회(혹은 여타의) 운동주체들에게 환호와 당혹스러움을 함께 안겨주었다. 오랜만에 확인했던 대중의 자발적 발언-그것은 운동주체들을 열광케했지만, 열광과 동시에 운동주체들은 '사태'를 어떻게 전진시켜야 할 지에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무수한 대중의 발언을 학생사회내 반(反)성폭력적인 문화지반의 형성으로 결실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무수한 대중의 발언을 학생사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성으로 성과맺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앞에서 운동주체들은 사실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회 및 여타의) 운동주체들은 무수한 논쟁과 입장들을 가로지르는 중심적 논의지반을 강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중의 발언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를 공론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적절한 장치의 제안도 사실상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그간의 논쟁을 갈무리한 인문대 학생회의 논쟁 1차 정리 자보 이후 대중은 다시 침묵하였고 논쟁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다. 이후 1차적인 논쟁을 정리하고 다시금 보다 전진된 논쟁을 촉발시키고자 기획했었던 5월 초의 토론회는 극히 저조한 참가자로 썰렁한 토론회장과 다시금 침묵해버린 (혹은 공론장을 꺼린) 대중에 대한 아쉬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번 폭발한 대중의 논쟁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는 법. 성폭력 논쟁 이후 각과에서는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서서히 여성운동의 활성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몇몇 과에서 여성운동 단위로의 자기조직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존에 활동하던 몇몇 과의 여성운동 단위들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논쟁 이후 자신들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잡아가면서 실천을 준비하



기 시작하였고, 9월에 들어서는 함께 연대하는 초기적 테이블의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구체적 사업으로 [성폭력해방공간선언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지금은 인문대 학생회 선거에 함께 개입하기로 하면서 이후의 [인문대 여성모임 연대](?)를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논쟁 이후에는 논쟁 자체의 고유한 효과와 이러한 자기조직화된 단위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대중적 논의의반이 논쟁 이전보다는 일정하게 전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앞으로의 방향 : 학생회 운동 그리고 여성운동단위의 관계맺음

전인대를 둘러싼 일련의 '원죄', 그리고 해방터 논쟁 과정에서 적절한 논점과 장치의 부재등 16대 인문대 학생회 운동은 '성폭력'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한계를 보였다. 성적차이에 기반한 적대예의 둔감함, 대중운동 정책의 협소함등이 이러한 한계의 원인이자 또한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들을 통하여 인문대 학생회 운동은 향후의 자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사회내의 적대들에 대한 보다 강인한 사고와 문제의 제기, 대중의 발언 그리고 충돌의 과정에 함께 하면서 이러한 논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논점의 제기, 이러한 논쟁과 충돌의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저항주체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적절한 장치에 대한 연구 및 제안,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자기조직화한 각각의 주체들과의 연대.

사실상, 올해의 논쟁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운동 주체와 단위의 형성 및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인문대 학생사회내에서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혹은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이 형성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은폐되어 있던 성(性)을 둘러싼 갈등과 적대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운동화시켜내는 주체와 단위가 실물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연대를 형성해나가려 하고 있다.

앞으로의 인문대 학생회 운동은 은폐되어 있던 적대를 드러내며 새로이 분출하는 대중의 역능과 자기조직화 기운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행여나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이러한 대중의 운동을 상대적으로 부차화시켜서도 안되며, 또한 이러한 운동의 경향성을 앙상한 대표성을 앞세우며 '학생회'라는 자신의 울타리로 무리하게 끌어들이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여성운동의 옹호와 동시에 이러한 운동과의 정책적·실천적·조직적 연대를 모색해나가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함이 옳다. 그리하여 연대의 원리로 인문대 학생사회를 재구축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